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24 선고 2018가단4893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변론 종결2019. 4. 3.

판결 선고2019. 4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,852,003원 및 그 중 92,396,350원에 대하여 2018. 6. 3.부터 2019. 1. 8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D, E, F, G는 각 1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(피고 C의 채무는 인천지방법원 2017. 9. 22. 선고 2017가합51340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,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8. 5. 3.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음).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원고에게 92,852,003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92,396,350원에 대하여 2018. 6. 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. 1. 8.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D, E, F,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
나. 인정근거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송인우

별지